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11호 2020. 3. 1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264호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삼척시 조례 제1265호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규 칙

- 삼척시 규칙 제590호 삼척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 6
- 삼척시 규칙 제591호 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32

훈 령

- 삼척시 훈령 제301호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삼척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 38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40호 제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 ----- 39
- 삼척시 고시 제49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40
- 삼척시 고시 제50호 방림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2차) 고시 ----- 4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56호 제217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 45
- 삼척시 공고 제268호 분할조서 의결 공고 ----- 46

공 람										
--------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제216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3.5.)에서 의결된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0년 3월 13일

삼척시 조례 제1264호(의원 발의)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융자금추천한도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한도액내에서 증액하여 추가로 융자추천 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하며”를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로, “3%”를 “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차보전 대상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차보전 등) 시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융자추천을 하는 경우, 이차보전 및 상환기간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차보전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추천을 받고 이차보전 중인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제216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3.5.)에서 의결된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0년 3월 13일

삼척시 조례 제1265호(의원 발의)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긴급히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인센티브 대상 및 규모, 기간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회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2020.3.6.)에서 의결된 삼척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0년 3월 13일

삼척시 규칙 제590호

삼척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삼척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자체감사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삼척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부서·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읍·면·동 및 의회사무과
2.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비·도비·시비 보조단체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2장 감사의 실시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임무·조직·예산 등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②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주기 및 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종류 외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점검 및 확인 등의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감사부서의 장이 실지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반 인원수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분야를 정하여 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경우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로 하며, 감사반원은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시킬 수 있다.

제7조(감사반 교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반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일보 및 현지출장) ① 감사반원은 실지감사 시 지적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감사반원은 실지감사 시 자료수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출장을 마쳤을 때에는 서면이나 구두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감사 종결회의)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실지감사 종결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종결회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확인서 등의 요구) ①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결과 처리 시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및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사람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유 및 변명·개선방안 등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3장 감사결과와 처리

제11조(현지조치)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목록과 요구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 추후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감사실무심의회) 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은 감사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해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회의 대상이 되는 감사에 감사반원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하며,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반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 「삼척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면책심사,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및 감사결과와 공개 등도 심의회에서 결정·처리한다.

제14조(감사결과와 처리기준 등) 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정·주의 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 2. 경고·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 및 기관 등에 주의 및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그 기관이나 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처분 시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을 같이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6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항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모든 자체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부서로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진정 민원처리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으로 하고, 공개시기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8조(포상 추천)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행정능률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업무공적이거나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고충·진정민원 등의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소관으로 접수된 고충·진정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자체감사의 방법과 절차를 적용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출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고충·진정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 1. 사인 간의 민사사항에 속하는 경우
- 2. 형사소송의 계류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대상인 경우
4.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단체에 속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정한 경우

제20조(외부기관 수감사항 및 범죄사실 등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동향과 감사·조사 또는 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수검 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현금·물품·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횡령, 분실,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요구 사항이 이미 검찰·경찰 및 감사원 등에서 수사·감사 등이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의 수사 및 감사결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와 사후관리

제21조(재심의 신청 및 처리) ① 제1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하면 2개월 이내에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조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심의 신청 안전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이미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⑤ 시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직권 재심의)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3조(이행결과 제출 및 확인)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지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전의 처분요구보다 가중하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감사담당자 등

제24조(감사담당자 자격) 시장은 감사담당자를 선발할 때에는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감사담당자 우대) ① 시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자를 근무 성적평정 및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2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역량을 축적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속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공무원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담당자는 퇴직 또는 전보, 휴직 등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주기 및 감사기간 (제3조 관련)

감사종류	감사대상기관	감사주기	감사범위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종합감사	읍·면·동	2년	전회 감사개시 월부터 ~ 금회 감사개시 전월까지 (소관사무 전반)	4일 이내	8명 이내
재무감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출자·출연기관	2년	전회 감사개시 월부터 ~ 금회 감사개시 전월까지 (예산·회계분야 전반)	4일 이내	5명 이내
특정감사 성과감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출자·출연기관	감사의 범위·시기·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장이 따로 정함		10일 이내	5명 이내
복무감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동	수시	복무규정 위반, 비위사실 확인, 근무실태 점검 등	수시	5명 이내

- 비고
1. 일상감사는 「삼척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감사반원은 기획감사실 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타부서 관련업무 전담 직원을 편성할 수 있다.
 3. 계획된 감사기간은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4.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 지역내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감사일보
(. . .)

○ 보고자 : 직 성명 (서명)

			담당(팀장)	감사반장
감사분야	감사부서	감사내용결과 및 조치계획		감사반장 지시

[별지 제2호서식]

현지 확인 출장 통제부

(수감기관 :)

입원 번호	감사 분야	출 장 내 역					결 재	
		감 사 담당자	출장 일시	출장 지역	확인해야 할 내용	동 공무원	담당 (팀장)	반 장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

제 목

1. 현 황

2. 내 용

3. 확인자 의견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임회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4. 관련자 조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관리기간	책임 한계	현근무처

※ 관련자 모두가 위 사실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함 ㉠

[별지 제4호서식]

문답서

- 1. 주 소:
- 2. 소 속:
- 3. 직위 및 직명: (전, 소속직위 및 직명)
- 4.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사건과 관련하여 년 월 일 에서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 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 중간 생략 -----

[덴 뒤]

문 :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나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답 : (문답의 신뢰를 위하여 진술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유도)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케 한 바 진술내용에 이상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한다.

년 월 일

진술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감사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질문서

발부번호 :	
제 목 :	
질문사항	
년 월 일 기관명 직위 성명 귀하 감사반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반송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답 변 서

발부번호 :	
제 목 :	
답변사항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감사반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기 관 명 :</p> <p style="text-align: right;">직, 성 명 : (인)</p> <p>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p>

[별지 제7호서식]

【일련번호 : 】

현지처분 요구서

년 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감사반장 (인)

【기관·부서명】

【시 행 년 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제 목】

【위법부당내용】

【처 분 요 구】

[별지 제8호서식]

감사실무심의회 심의조서

감사종류		감사기간		수감기관 (부서)				
제 목								
감 사 자								
<지적사항> <조치이견 및 심의결과> ① 행정·재정상 조치								
행 정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감사자 이견	심 의 결 과	감사자 이견	심 의 결 과					
② 관련 공무원 문책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책임 구분	문 책 구 분		현소속
						감사자 의견	심 의 결 과	
<input type="checkbox"/> 심의내용 □ 심의내용								

첨부 : ① 확인서 ② 문답서 ③ 답변서 ④ 그 밖의 증거서류

[별지 제9호서식]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제 목】

【위법·부당 내용】

[별지 제10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직 명		
	성 명	전화번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p>「삼척시 자체감사 규칙」 제21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p> <p>삼 척 시 장 귀하</p>				

[별지 제11호서식]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조서

【재심의 신청개요】

【재심의 신청 주요내용】

【검 토 결 과】

【결 론】

[별지 제12호서식]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

○ 감사명 : ○○감사
(기관명 :)

연번	감사기간	제 목	처분요구사항				처리내용	완료여부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처분내용		완료	추진중
계		행정상 : 건(시정, 주의, 개선, 기타) 신분상 : 명(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재정상 : 천원(추징, 회수, 감액, 기타)							

[별지 제13호서식]

감사공무원증

(앞 쪽)

제 호
소속
성명

감사공무원증

사 진
3cm×4cm
(반명합판)

위 사람은 「삼척시 자체감사 규칙」 제26조에 따른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삼척시장 (인)

54mm×86mm(PVC(비닐)980.4g/m²)

(뒤 쪽)

주의사항

- 본 증표는 감사 시 피감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증표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본 증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증표는 감사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타부서로 전출할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

결재		일련 번호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사진첨부	비고 (사유)
기획 감사실장	감사담당							

제5회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2020.3.6.)에서 의결된 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0년 3월 13일

삼척시 규칙 제591호

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

표자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 제시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소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0점)	<p>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정량평가]</p> <p>□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 행정처분 내용에 따른 감점 기준 ></p> <p>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90일 이상 :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0일 미만일 경우 : 5점 <p style="text-align: right;">※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p>	
	<p>□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대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 이력,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이력이 없는 경우 :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1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정량평가]	
	<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점)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5점) <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5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정량평가]	
	<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3점) <input type="checkbo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점)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점)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3점)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식 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3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4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정성평가]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지역 내 공공기관, 타 시설과의 협력관계 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20점)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10점)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10점)	
총점	정량평가 점수() + 정성평가 점수() : 총 ()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심사위원 소속:	직위(직책):	성명: (인)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삼척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3월 13일

삼척시장

삼척시 훈령 제301호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삼척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1조(「삼척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의 개정) 삼척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를 “감염병에 걸려”로 한다.

제2조(「삼척시 하천감시청원경찰 복무 규정」의 개정) 삼척시 하천감시청원 경찰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비치 장부 등) 청경 초소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삼척시 환선굴 내부안전 규정」의 개정) 삼척시 환선굴 내부안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20 - 4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삼척시장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도로명주소)	관리주체			
상거노리 출렁다리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103-2번지 (미로면 강변로 305-14)	건설과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매년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L=82.0m 준공:2006.01.01.
마평1교	삼척시 마평동 175-9번지	건설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 교량	*신규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2020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2020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비대상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 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L=60.0m 준공:2007.12.31.
삼척IC교	삼척시 교동 243-3번지	건설과			L=29.0m 준공:1992.12.31.

삼척시 고시 제2020 - 49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철거)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13.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박결남로 906 (적노동) 의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3.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572-4		20200313	건물번호 정정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 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572-3		20200313	건물번호 정정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 명칭활용
3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산29-3	강원도삼척시박걸 남로906 (적노동)	20200313	가설건축물	20090626	역사인물(박걸남) 이름활용(문화재명칭)
4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141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179-14 (자원동)	20200313	기존건물	20090626	지형지물(오십천) 명칭활용
5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55-98, 읍상동 2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7 (남양동)	20200313	건물신축	20090626	엑스포명칭활용 (성남엑스포개최지일원)
6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165-1	강원도 삼척시 자원길 53 (자원동)	20200313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고시일					
폐지	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572-4	20200313	20200313	건물번호정정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명칭활용	
폐지	2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572-3	20200313	20200313	건물번호정정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명칭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산29-3	20200313	20200313	가설건축물	20090626	역사인물(박걸남)이름활용(문화재명칭)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141	20200313	20200313	기존건물	20090626	지형지물(오십천)명칭활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55-98, 읍상동 2	20200313	20200313	건물신축	20090626	엑스포명칭활용(성남엑스포개최지일원)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165-1	20200313	20200313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계	6 건					

삼척시 고시 제 2020-50호

방림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2차)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방림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방림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바람직한 농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3. 사업비 : 500,000천원
 - 국고 (350,000천원), 지방비(150,000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위 치 :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2리
 - 지역경관개선사업
 - 경관길 조성 (경관수 식재 832m, 진입로 경관조성 3,840m, 습터조성 2개소, 재활용 수집장 개선 5개소)
 - 경관길 정비 (CCTV설치 9개소, 마을이정표 5개소, 마을중합안내도 1개소)
 - 지역역량강화사업 : 주민교육, 마을브랜드 개발, 방림마을스토리텔링 개발

5.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6. 사업기간 : 2018. 05. ~ 2020. 12.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농정과 (☎ 033-570-3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고 제2020-256호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21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10.

삼척시장

제21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1. 2019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 (기획감사실)
-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 3.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총무과)
- 4. 2020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

삼척시공고 제2020-268호

분할조서 의결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고 기간 : 2020. 3.13. ~ 2019. 3.27.
- 2. 공고 내용 :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면적(m ²)	분할 후 필지 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삼척시		당저	113-7	대	350	2	김*하 외1인	기재생략	기재생략	김*하 외1인

2020년 3월 13일

삼척시장